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79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 : 복기왕 · 윤종군 · 용혜인

한민수 · 김종민 · 서영교

임미애 • 박은정 • 이연희

정준호 · 채현일 · 박해철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이를 어긴 자는 의원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적 비상계엄령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국회의장은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하였음. 그러나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통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당의 담을 넘어 출입하거나 일부 의원은 결국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는 신속한 계엄령의 해제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로써, 현행 국회법의 개정을 통 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한시적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던 현행법 조문을 삭제하고,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에 더하여 전시·사변·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삭제, 제73조의3 신설).
- 나. 의장의 경호권 행사를 회기와 상관없이 국회 안에서 상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
- 다. 국회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 아닌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장은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간부급 인사 및 근무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관할 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행정기관의 명령이 아닌 국회의장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제144조제3항·제4항 신설).
- 라.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계 수준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함(안 제148조의

4 신설, 제155조제11호 삭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거나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 ⑤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
- ⑥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3조 중 "회기 중 국회"를 "국회"로 한다.

제14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장의 지휘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 원의 간부급 인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파견 근무의 기간을 종료하 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4(회의장 출입의 방해죄)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제1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	<u><</u> 삭	제>			
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					
<u>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u>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					
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					
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					
<u>다.</u>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					
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					
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있다.
-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 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 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 로 개의되기 어렵거나 전시·사 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

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 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 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 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 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 의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 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 국회 ------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 을 행사한다.

(생 략)

<신 설>

<u><</u>신 설>

<신 설>

- ⑤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 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 로 정한다.
-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 따라 국회의 경호 를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해 파견된 경 찰공무원의 간부급 인사를 지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견 근무의 기간을 종료하거 나 연장할 수 있다.
 - 제148조의4(회의장 출입의 방해 죄)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 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 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기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수 있다.

- 1. ~ 10. (생략)
-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 16. (생략)

<u>위</u>	원 :	ब्रे इ	회의	장이] }	출입	<u>하는</u>	<u> </u>
<u>을</u>	- 坦	}해 द	한 /	사람	.은	<u>5년</u>	०) त	하의
<u>징</u>	역	또는	= :	[천덕	<u>만원</u>	(ه	하의	벌
글	-에	처한	나나	<u>.</u>				
제15	55조	:(징)	계)					
1.	~	10.	(현] 행고	가 길	같음))	
<	삭	제>	>					
		•	_					
12	2. ~	- 16	5. (현 행	과	같음	'-)	